

##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(안) 검토 보고서

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2년 8월 29일 조명호 의원 외 2인의 발의로 제출되어,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### 1. 제안 이유

- 현행 관계 조례는 1996년 3월 1일 제정 공포되고, 1999년 1월 11일 1차 개정 시행 중에 있으나, 제6조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만 기술하고 있어, 행정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여
- 안 제6조에 공개하여야 할 행정정보를 명시 하므로서 적극적인 공개 행정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, 시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 골자

- 공개의 정의에 인터넷과 시보 공개를 추가(안제2조3호)
-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(안 제6조)
- 현행 제6조(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)를 안 제6조의2로 조항을 개정
- 행정정보 청구인이 100인 이상 다수이거나 공개 대상 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 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과 시보에 동시에 공개토록 하며, 정기공개는 1월과 7월에 하도록 명시(안 제8조제3항 신설)

### 3. 법적 근거

-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의원 발의로 개정 하고자하는 개정 조례안 임.

#### 4.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1996년 3월 1일 시행 이후 그동안 공개하여야 할 의무 규정이 없는 관계로 자발적인 공개 행정이 미흡한 문제점을 인식하고,
- 안 제6조 신설 조항에서 공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,
- 안 제8조제3항 신설 조항에서 100인 이상 다수 청구인과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를 인터넷과 시보에 공개하고, 정기 공개는 1월과 7월에 공개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 안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,
- 업무계획과 중장기 종합계획 등 계획중인 업무중 민감한 부문이 있을 경우 공익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오나, 안 제6조의2 규정에 공개함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,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에 별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.